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5.

건설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12월 7일

○ 회부일자 : 2009년 12월 9일

상정일자 :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9. 12. 16 :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환경국장 지 용 옥)

제안 이유

- 도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다양한 체육 재정수요 충족
 - 체육관, 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 인프라 조성
- 현재의 재정운용 틀로서는 체육 재정수요 충족에 한계
 - 별도의 재정보호, 긴요한 재정수요 선별 충족 필요

□ 주요 내용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출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
- 조성규모 : 200억원
- 기금용도 :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 기금운용 : 기금 총액의 30%범위에서 사용
- 유효기간 : 2019. 12. 31

3. 검토보고 요지

(건설문화전문위원 윤영해)

-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을 검토한바
- 도민의 소득증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는 건강욕구 및 대규모 체육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

■ 참고사항 : 시도별 기금조성 현황(조성/목표)

서울 480/500억원, 부산 387/500억원, 대구 266/380억원
대전 104/100억원, 광주 114/100억원, 경기 401/500억원
강원 82/100억원, 전남 83/ 80억원, 경북 157/200억원
경남 108/100억원, 전북 51/100억원

※ 미조성 시도 :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제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 12. 16(제4차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외 7인
- 수정이유
 -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 용어 수정
- 주요 수정내용 : 용어 수정(안 제3조제2호)
 - 전국체육대회 ⇒ 전국대회

7. 심사 결과 : 수정 의결

8. 소수이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전국체육대회”를 “전국대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3조(기금의 용도)(생략)</p> <p>1. (생략)</p> <p>2. <u>전국체육대회</u>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사업</p> <p>3. (생략)</p> <p>4. (생략)</p> | <p>제3조(기금의 용도)(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u>전국대회</u>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사업</p> <p>3. (원안과 같음)</p> <p>4. (원안과 같음)</p>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
3.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4.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2.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북도 금고(체육진흥기금 계좌)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충북체육 관련 단체 임·직원 등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